

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
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(또는 조합원) 및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9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1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[2026. 7. 29.(수)~2026. 8. 12.(수)]
2. 공람장소
 - 가.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(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, 8층)
 - 나.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서울 성북구 돌곶이로23가길 37, 1층)
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
4. 의견제출 :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
5.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
 - 가. 사업명칭 :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 - 나. 사업면적 : 14,061.02㎡
 - 다. 시 행 자 :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박병록)
 - 라. 변경내용 : 조합정관 변경, 사업구역 확대 등
6. 문의 :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(☎02-2241-2914)

공 랑 의 견 서					
공 고 명	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				
공람기간	2026. 7. 29.(수) ~ 2026. 8. 12.(수) [14일간]				
의견제출인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	(연락처: - -)			
	유형	☐ 토지등소유자(또는 조합원) ☐ 이해관계인 ☐ 주민			
의견내용					
본인은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과 관련하여,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6년 월 일 제 출 인 (서명 또는 인) 성북구청장 귀하					

성북구청장 귀하